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63호 2020. 11. 9.(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개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0-89호)

공 고

- 예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0-1342호)
- 예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0-1343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개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고시

예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09일

예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개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소재지에 주민생활편익을 위한 문화·복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고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면 중심지의 거점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업의 내용

- 위 치 : 예천군 개포면 신음리 일원
- 주요 사업내용
 - 기초 생활 기 반 : 행복열린센터 조성, 행복나눔마당 조성
 - 지 역 경 관 개 선 : 안전가로환경 정비
 - 지 역 역 량 강 화 : 교육·지역활성화 등

4. 사업효과

- 농어촌 중심지 기능의 강화를 배후 농촌지역과 긴밀히 연계시킴으로써 농촌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유도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5. 사업비 : 4,000백만원 (국비 2,800 군비 1,200)

6.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4개년)

7.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일괄(위)수탁)

8. 기타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건설교통과(054-650-65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고 남·북한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상호 신뢰와 동질성 회복을 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안 제1조 ~ 제2조)

나. 재정지원(안 제3조)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 제8조)

-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신분 등 규정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행정지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 보내실 곳 : 우)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행정지원실)
 - 전 화 : 054-650-6838
 - 팩 스 : 054-650-6089
 - 전자 우편 : whitek7657@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

☐ 조례명 : 예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예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경상북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 당국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2.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조성의 부담금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천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 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며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있는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천군협의회 자문위원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예천군의회 의원
6.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부서장
7.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② 품위 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09일

예 천 군 수

1. 제정 이유

○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예천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천군협의회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천군협의회의 사무운영과 평화통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3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천군협의회 사무 등을 대행하는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나. 운영 및 사무 처리, 사무 지원 및 준용 규정(안 제4조 ~ 제5조)

- 군수의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 대행
- 협의회 운영에 관한 협의
-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다. 인력 등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 근거 마련(안 제6조 ~ 제7조)

- 공무원의 파견 및 행정적 사무지원
- 협의회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라. 포상규정(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행정지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 보내실 곳 : 우)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행정지원실)
 - 전 화 : 054-650-6838
 - 팩 스 : 054-650-6089
 - 전자 우편 : whitek7657@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

□ 조 례 명 : 예 천 군 민 주 평 화 통 일 자 문 회 의 대 행 기 관 운 영 에 관
한 조 례

○ 성 명 (단 체 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내 용	의 건	비 고

예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천군협의회 사무 등을 대행하는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대행기관) 대행기관은 예천군으로 한다.

제4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의 장인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천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사무를 대행할 때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5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 개최를 위하여 군 소속 공공시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본래의 용도 및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